

지 하 철 도 공 제

제출일자	1990. 7. 19	제출처	서울특별시
보급기간	1990. 5. 3. 1.	신청처	시정
수신처		발급처	장
보급기간		발급처	
시정일자	1990. 7. 19	발급처	
보조기관	교통국장 전결 교통기획과장 R 지하철도계장 2600	입조기관	법무담당관 74855
신청처	김재정	발급처	문서통제
발급처		발급처	발송인
발급처	안찰조	발급처	시장
발급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발급처	
(제 1원)		발급처	
수신	내부결재	발급처	
제목	같은건	발급처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발급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첨부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발급처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발급처	
(제 2원)		발급처	
발급처	교통국	발급처	교통국장
발급처	시정	발급처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첨부
제정행정주사보
이영성

103

1. 서울 . 서울시 지하철공제 조약 및 조약시행규 .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 위하여 첨부내용의 입법예고문을 통보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끝.

외부
대조필
원
[인]

1990. 7. 10
기초 1990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및 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채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990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 지하철공채 매출금의 일부를 제2기 지하철건설제원에 충당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 공채 상환방법을 개선하고, 공채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며
- 격증하는 지하철공채 업무를 단순화하여 업무량을 감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항 목	현 행	개 정 (안)
○ 원금상환방법 개선	○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10년거치 일시상환
○ 이자율 조정	○ 년 6% 복리	○ 년 3% 복리
○ 공채매출기준일 변경	○ 실제 매출일	○ 발행일의 말일
○ 공채원리금 청구권의 시효기산일 명문화	○ 매년차별(1차년도-5차년도) 상환일로 부터 기산	○ 최종 상환일로 부터 기산

3. 의견 제출

이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8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기획과장, 전화 773-6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